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평남 의원
- 나. 의안번호: 제2299호
- 다. 발의일자: 2021. 4. 2.
- 라. 회부일자: 2021. 4. 6.

**2. 제 안 사 유**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구성에 서울특별시 의원을 추가하여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구성에 서울특별 시의원을 포함함(안 제8조제1항제5호).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구성에 서울특별시의원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및 동 조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별로 총 4개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협의회는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이 위원장, 자원순환과장이 부위원장,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 공무원들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 규정<sup>1)</sup>에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지원협의체의 구성

따라 해당 자치구 구의원<sup>2)</sup>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별 주민지원기금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인정됨.

다만, 현재 협의회에 해당 자치구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이 별도 참여하는 것은 역할 중복 등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이고 지방의회는 기구의 축소 또는 통폐합 등에 대해 수정·의결할 수는 있으나, 기구의 설치 또는 확대 등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할 수 없다는 판례 해석<sup>3)</sup>이 있는 바, 협의회 위원 대상에 시의원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sup>4)</sup>.

---

방법에 따르면, 지원협의회 위원으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원 등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자원회수시설별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위원 중 구의원 수  
: 양천 2명, 노원 3명, 강남 5명, 마포 4명(고양시의원 1명 포함)

3)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권한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행정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장만이 조례안 제안권을 갖는다. 또한 지방의회는 소극적으로(기구 축소, 통폐합) 수정의결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기구 설치·확대) 수정의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①조례안 제안권과 ②적극적 수정권을 갖지 못한다.”(최계영, 2013. 9.,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 규정 판단 기준 연구)

4) 동 개정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는 문제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음.